

#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의안제출일 및 제출자 : 2002. 10. 11,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2. 10. 16
- 다. 의안번호 : 제 2002 - 37 호
- 라. 상정일자 : 제9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(2002. 10. 19 상정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안수상)

### 가. 제안이유

- 취득코자 하는 재산 : 거창군 위천면 장거리 498-3, 498-14번지 일부
- 위천면 복지회관 건축물이 경찰공제회 소유 토지 일부를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어 점유 토지를 매입코자함.  
⇒ 부지매입계획 : 토지 2필지 330m<sup>2</sup>(99.8평)

### 나. 주요골자

#### (1) 취득재산의 표시

구분	재산종별	재 산 소 재 지	지목	수량	예정금액	비고
취득	토지	거창군 위천면 장거리 498-3	대지	305	21,708	
취득	도로	거창군 위천면 장거리 498-14	도로	25	750	
	계			330 (99.8평)	22,458	

#### (2) 취득방법

- 감정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 수의 계약 매입

#### (3) 관련공부확인 : 따로 붙임

#### (4) 위치도 및 지적도 : 따로 붙임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하춘영)

-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(안)은 위천면 복지회관 건물이 경찰공제회 소유 토지 “거창군 위천면 장거리 498-3번지 305㎡”, “거창군 위천면 장거리 498-14번지 25㎡” 등 총 2필지 330㎡의 일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토지 330㎡를 매입하여 복지회관 운영 용도에 알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기재 생략

### 6. 수정안 요지 : 없음

###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위천면 복지회관 건물이 경찰공제회 소유 토지 “거창군 위천면 장거리 498-3번지 305㎡”, “거창군 위천면 장거리 498-14번지 25㎡” 등 총 2필지 330㎡의 일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토지 330㎡를 매입하여 복지회관 운영용도에 알맞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함

###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###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